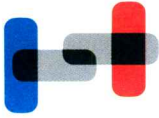
 (주) 화승인더스트리	규 정	HSIS-A-03-03	입안부서	경영기획팀
	경영위원회 운영		제정일자	2016. 5. 20
			페이지	(CONTROLLED) 1/7

승 인

개정번호	개 정 일 자	작 성	검 토				승 인
			매니저	임 원			
0	2016. 5. 2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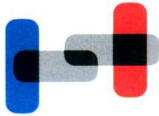
회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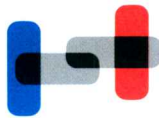
성 명								
날 인								
회람일								
성 명								
날 인								
회람일								
성 명								
날 인								
회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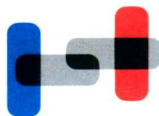
 (주) 화승인더스트리	규 정	HSIS-A-03-03	입안부서	경영기획팀
	경영위원회 운영		제정일자	2016. 5. 20
			페이지	2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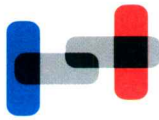
개정 이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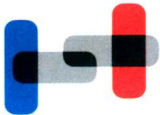
개정 번호	개 정 일 자	개 정 내 용	품질보증본부 확인			
			확인일자	담 당	팀 장	본부장
0	2016. 5. 20	제정	2016. 6. 22			

 (주) 화승인더스트리	규	정	HSIS-A-03-03	제정일자	2016. 5. 20
	경영위원회 운영			개정일자	2016. 5. 20
				개정번호	0
				페이지	3 / 7
제1장 총칙					
1. 목적					
본 규정은 (주)화승인더스트리(이하 ‘회사’)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권한 및 기능					
2.1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2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 및 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본 규정에 기재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2.3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4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4.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4.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4.3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및 상법 제 542조의 9,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4.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2.4.5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기					
2.4.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구성					
3. 구성					
3.1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입안 부서	경영기획팀		배 포 처	전 부 서	

 (주) 화승인더스트리	규	정	HSIS-A-03-03	제정일자	2016. 5. 20
	경영위원회 운영			개정일자	2016. 5. 20
				개정번호	0
				페이지	4 / 7
3.3 위원회 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4. 위원장					
4.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4.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4.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 ‘HSIS-A-03-01 (이사회 운영)’의 5.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출석 등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6.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전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7.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4.3항에 의한다.					
8. 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9. 결의방법					
9.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9.2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주) 화승인더스트리	규	정	HSIS-A-03-03	제정일자	2016. 5. 20
	경영위원회 운영			개정일자	2016. 5. 20
				개정번호	0
				페이지	5 / 7
9.3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9.4 9.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이사회와의 관계					
10.1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모든 이사에게 즉시 통지되며,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내에 이사회 소집을 이사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2 10.1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재결의 할 수 있다.					
제4장 부의사항					
11. 부의사항					
위원회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위임한 다음사항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 등 외부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의결 및 의사록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본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11.1 투자에 관한사항					
11.1.1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 외 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대한 결정					
11.1.2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의 철수에 대한 결정					
11.1.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혹은 처분에 대한 결정					
11.1.4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대한 결정					
11.2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11.2.1 자기자본의 10%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의 차입에 대한 결정 (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11.2.2 자기자본의 5% 이상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에 대한 결정					
11.2.3 자기자본의 5% 이상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대한 결정 (담보제공은 타인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채무보증에서 입찰, 계약, 하자 및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					

 (주) 화승인더스트리	규	정	HSIS-A-03-03	제정일자	2016. 5. 20
	경영위원회 운영			개정일자	2016. 5. 20
				개정번호	0
				페이지	6 / 7
11.2.4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전대여(타인에 대한 선급지급금, 금전의 가지급, 금전 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대한 결정 11.3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11.3.1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중단 또는 정지, 거래중단 또는 제품의 수거나 파기 등에 대한 결정 11.3.2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 활동의 중단 또는 폐업의 결정 11.4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1.4.1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정책의 결정 11.4.2 중요한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11.4.3 중요한 기술도입 계약의 체결 또는 기술이전, 기술제휴 11.4.4 신물질, 신기술 관련 특허권의 취득, 양도 등 처분과 양수 11.4.5 회사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11.4.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11.4.7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의 기본원칙의 결정 및 변경 11.4.8 회사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기 11.4.9 대표이사가 신속한 경영판단 등의 필요에 따라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정한 사항 11.5 기타 증권거래소 공시 또는 외부기관에서 위원회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재무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 11.6 기타 법령 및 정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경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하기로 한 사항 12. 위임 본 위원회에서 부의되어 결의된 사항의 세부사항 및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위원회 결의내용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 이 하 여 백 -					

 (주) 화승인더스트리	규	정	HSIS-A-03-03	제정일자	2016. 5. 20
	경영위원회 운영			개정일자	2016. 5. 20
				개정번호	0
				페이지	7 / 7
제5장 기타사항					
13. 질서유지					
13.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2 위원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14. 의사록					
14.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14.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5. 간사					
15.1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도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15.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16.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7.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하 여 백 -					